

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35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복지시설의 주소변동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규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제2조중 “산55-24번지”를 “산751-1번지”로 개정
- 별표중 “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제20조에 준함”을 “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준함”으로 개정

첨 부

-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구조문 대비표 1부

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산55-24번지”를 “산751-1번지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안
제2조(위치) ① 복지관은 충주시 호암동 산55-24번지에 둔다 ②(생략)	제2조(위치) ① 산75-1번지..... ②(현행과 같음)				

<별표>

복지시설이용료

구 분	기 준	이 용 료		비 고
		생활보호대상자	일 반	
물리치료 (언어, 심리)	보건복지부장관이 고 시하는 의료보험진료 수가 및 약가	장애복지법 제48조 및 동법시 행령 제38조에 준함		
직업훈련	1인 1개월	무 료	20,000원	
수 영 장	1회 2시간	"	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실비	
	월 회 원	"		
기 타		자체 운영규정에 의한 실비		